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4
----------	-----

제출년월일 : 1999.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 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며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한 사문화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법률과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
임.

□ 주요골자

1. 분뇨수집의무지역 및 제외지역에 대한 구분 삭제(안 제5조).
현재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분뇨를 수집하고 있어, 제외지역을 규정하
고 있는 조항을 삭제
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 기준 삭제(안 제7조,
제12조, 제15조).
법령에 운영관리기준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삭제

3.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급규정 신설(안 제8조).

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청소수수료 감면대상자의 정화조 청소 또는 분뇨를 대행업소에서 수거시 그 실비를 시장이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4. 분뇨관련영업 허가제한 규정 삭제(안 제24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폐지

5.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16조의 별표4)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는 부과대상 항목의 적용 및 방류수수질관리강화를 위해 방류수수질기준초과 부분에 있어서는 상향조정을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부분적 상·하향 조정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제4호를 제1호.제2호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중 제1항·제4항 및 제7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5항을 제3항으로, 제6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 제1항(중전 제2항)본문중 “법제19조 제6항”을 “법제18조 제4항”으로,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및단독정화조”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로 하며, 동조 제4항(중전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시장은 정화조청소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에 대한 청소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그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 ”으로 한다.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목중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을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으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4장 및 제5장을 삭제하고, 제6장을 제4장으로 하며, 제4장(중전 제6장)중 제27조를 삭제하고, 제28조 내지 제31조를 제27조내지 제30조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중 (별표4)의 과태료부과기준조항은 1999. 2. 8개정 공포된 법률제586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과 태 료 부 과 기 준[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단위 :천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지(법 제5조)			
(1)1일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			
(가)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미만을 초과	1,000	2,000	2,500
(나)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초과	1,500	2,500	3,500
(다)방류수수질기준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을 초과	2,000	3,000	4,000
(라)방류수수질기준 200퍼센트이상을 초과한 경우	2,500	3,500	4,500
(2)1일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가)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미만을 초과	1,500	2,500	3,500
(나)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초과	2,000	3,000	4,000
(다)방류수수질기준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을 초과	2,500	3,500	4,500
(라)방류수수질기준 200퍼센트이상을 초과한 경우	3,000	4,000	5,000
2.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24조의2 제4항)			
(가)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0	2,000	2,500
(나)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초과한 경우	1,500	2,500	3,500
(다)방류수수질기준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을 초과한 경우	2,000	3,000	4,000
(라)방류수수질기준 200퍼센트이상을 초과한 경우	2,500	3,500	4,500

과 태 료 부 과 기 준[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단위 : 천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5조)			
(1) 처리인원이 90인미만	100	200	300
(2) 처리인원이 90인이상	300	400	500
2.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6조제4항)	300	400	500
3.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			
가.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300	400	500
나. 단독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4.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 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을 사용 한 자 (법 제12조, 제26조)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			
(1) 단독정화조 신고대상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100	200	300
(2)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300	400	500
(3) 허가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500	700	1,000
나. 준공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 단독정화조,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500	500	500
(2)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800	800	800
(3) 허가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1,000	1,000	1,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5.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법 제13조,제13조의2 제1항, 제27조)			
가. 단독정화조,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500	500	500
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800	800	800
다. 분뇨처리시설,허가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1,000	1,000	1,000
6.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법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가. 방류수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 1일 처리대상인원이 2천인이상인 단독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반기별 1회이상	100	200	500
(2) 허가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300	500	1,000
(3)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연1회이상	100	200	500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인원수 90인미만인 단독정화조시설의 경우	100	300	500
(2) 처리인원수 90인이상인 단독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신고대상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300	500	800
(3) 허가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500	700	1,000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다. 1일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500인이상인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라.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허가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500	700	1,000
마. 가~라 이외의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7.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 6항)	500	700	1,000
8.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법 제17조)	500	700	1,000
9. 분뇨제한용 신고를 아니한 자 (법 제20조2항)	500	700	1,000
10.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 제24조의2제2항, 제4항)			
가.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300	400	500
나.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100	200	300
1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사용한 자(법 제24조의2 제4항)	300	400	500
12.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5항)	300	400	500
13.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법제 34조1항 또는 제3항 규정)	300	400	5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4.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300	400	500
15.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법 제 35조제3항)	500	700	1,000
16.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법 제35조의3 제1항)	500	700	1,000
17.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38조제6항)	500	700	1,000
18.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의 제조업자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39조제6항)	500	700	1,000
19. 출입.조사 또는 검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9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또는 2항)	500	700	1,000
20. 기술관리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3항)	500	700	1,000
21.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하지아니한자(법 제43조제1항)	500	700	1,000
22. 장부를 기록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 제44조)	300	400	500
23. 휴업.폐업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 (법 제45조)	300	400	500
24.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46조제1항)	200	300	500

개 정 안

《비고》

5. 허가대상축산폐수처리시설은 -----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하며, 신고대상축산폐수 처리시설은 -----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 《비고》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하나의 부과대상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
3.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의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4. 방류수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 까지로 한다.
5. 허가대상축산폐수처리시설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하며, 신고대상축산폐수처리시설은 법 제24조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축산폐수정화조"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허가 및 신고대상외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토끼 및 기타 오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다만, 애완동물 및 조류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 4 (생 략) 제 5 조(분뇨수집의무지역 및 제외지역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구역의 전지역을 분뇨수집의무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오지·벽지 및 도서지역등 분뇨수집운반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다수인이 모이는 국·도립공원등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역,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조(정의) (생 략) (삭 제) * 법 제33조규정 삭제 99. 2. 8개정 (삭 제) * 상위법결에 대상가축을 명시(법 제2조 11호 99. 2. 8개정) 1 ~ 2(현행 3호 ~ 4호와 같음) 제 5 조(분뇨수집의무지역 및 제외지역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 ----- (삭 제) * 인공 조항의 변경 및 전지역수집의무지역으로 단서조항을 삭제 (삭 제) * ①항 규정에 전지역을 수집의무지역으로 불요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오수 및 분뇨의 처리	제 6 조(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①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공에 있어 철근배근, 배관, 여재 배치, 콘크리트타설등 시장이 지정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진등 입증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등의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 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정화조내부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채우게 하는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7 조(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 ①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일 처리용량 200킬로리터이상의 시설은 월 1회이상 2. 1일 처리용량 200킬로리터미만 100킬로리터이상의 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3.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미만의 시설은 6월마다 1회이상	(삭 제) * 법제12조, 시행규칙23. 24조 규정에 준공검사기준 명시 (삭 제) *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오수정화시설 등의 운영.관리 기준 구체적 명시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등의 기능점점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관리대행자 2.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③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수리, 처리용량, 처리방법, 구조물의 구역, 기계, 설비등의 정화기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한 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개축 으로 인하여 유입수의 성상 또는 유입량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당시에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정수등) ①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거나 처리함에 있어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를 할에 있어서의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1. (생 략)	(삭 제) *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함 (삭 제) * 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및 법 제10조 시행령 제6조 규정에의하여 신고 대상을 명시 (삭 제) * 법제9조 시행령 제4조 및 법제10조 시행령 제6조 규정에의하여 신고 대상을 명시 제 8 조(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정수등) ① (삭 제) * 분뇨관련영업허가자로 하여금 대행으로 불요 ① 법 제18조제4항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 ----- * 용어정리 및 적법조항 인용(법 제2조 5호 99.2.8 개정) 1. (현행과 같음)			

신·구·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전소유자가 미납한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⑤ (생 략)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		
⑦ 시장이 정한 수거대상지역 이외에서 청소의무자의 청소요구가 있어 분뇨를 수거한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④ 시장은 정화조 청소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의 정화조 청소 또는 분뇨를 수집하였을 경우 그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조례 제5조 규정에의하여 전지역 수집의무지역으로 불요		
제11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시장은 별 제 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를 함 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 -- 별 제18조제1항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지역별 또는 건축물별로 청소계획을 세워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청소가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오수정화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이행명령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오수정화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수시로 오니저류조의 최종오니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는 오수정화시설로서 각조의 오니가 부패되고 스크럼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등을 제거한 후 종(種)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3. 오수정화시설등 내부침소는 스크럼침전오니 및 찌꺼기등(오니제거시에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을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4.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동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장이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전에 실시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운영관리기준 명시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5. 제4호에서 규정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대학교 부설연구기관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 ④ 오수정화시설등을 청소한 자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3호 규정에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의 여부를 청소 완료 다음날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명령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생 략) 제14조(축산폐수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공에 있어 철근배근,배관,여재배치,콘크리트 타설등의 공정을 관계공무원의 일회하에 시행하도록 하거나, 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등 일중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을 설치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현행과 같음) (삭 제) *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준공검사 기준 및 결과 부적합시는 개선 명령사항을 명시	* 법 제14조의2 규정에 개선명령사항을 구체적 명시	

신·구 문 대 비 표

현 · 행	개 정	안
제15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 ①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원 1회이상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2. 방류수의 수질측정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1일 처리용량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연 1회이상 3.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악취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래의 발생과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점검 및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정기점검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대행자 또는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2. 제1항제2호의 방류수의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	(삭 제) *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의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관리기준을 명시	

신·구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배출부과금등의 부과기준) 법 제29조, 법 제37조제2항 및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으며,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 사항은(청문, 과태료처분 통지 등)은 과주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서 정한 서식등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배출부과금등의 부과기준) 법 제29조, 법 제37조제2항 및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으며,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 사항은(청문, 과태료처분 통지 등)은 과주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서 정한 서식등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태료 및 배출부과금의 부과 기준)		
제17조(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의 축산시설중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의 축산시설중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축산폐수관리체계를 증진의 허가, 신고,간이대상에서 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단순화 함으로 관련법 제33조 규정을 삭제(99. 2. 8)
제18조(가축의 사육제한지역)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가축의 사육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가축의 사육제한지역)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가축의 사육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 법 제34조 규정에 세부규정
			(삭 제)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제한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제한지역을 일부제한지역과 전부제한하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전부제한지역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일부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도 같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안에 부설한 계류장 4.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으로 사용하는 1마리이하의 소,말,돼지 또는 5수 이하의 가금류 ④가축의 사육제한지역은 (별표5)와 같다.	제20조(축사의 유지관리)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한 상 철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1조(가축의 사육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①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20조 규정을 위반한 때에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규정에 운영관리기준 명시	(삭 제) * 법 제28조 규정에 운영관리기준 명시	(삭 제) * 전부제한지역내 단독주택등에서 대부분이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축산농가가 있어 지정이 불합리 함
			(삭 제) * 법 제46조규정에 보고검사 기준 명시 * 법 제28조 규정에 운영관리기준 명시	

신·구 문대 비 포

현	행	개	정	안
	②사육지 주변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은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전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22조(축사의 이전조치등)시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위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23 조(제한지역의에서의 가축의 사육) 제19조의 규정 예외한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하고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 제) * 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		
			(사 제) *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59조에 규정	

신·구 문 대 비

현	행	개	정	안
	제 5 장 분노와 관련된 영업허가등			
제24조(분노관련 영업의 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노관련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하며, 시장은 수질·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분노관련 영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분노관련 영업의 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노관련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하며, 시장은 수질·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분노관련 영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②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노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구역, 영업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노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구역, 영업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 제35조 제5항규정을 삭제개정(97.3.7)
③분노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노의 발생량과 기존분노관련 영업자의 분노수질·운반·처리능력 및 청소능력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분노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노의 발생량과 기존분노관련 영업자의 분노수질·운반·처리능력 및 청소능력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조건화할 수 있는사항 명시
④ 시장은 분노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분노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등을 추가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분노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분노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등을 추가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 제35조 제5항규정을 삭제개정(97.3.7)
제25조(분노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분노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분노의 처리능률향상과 주민편의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분노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분노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분노의 처리능률향상과 주민편의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의 설치기준 명시
1. 등록 또는 허가요건의 구비실태	1. 등록 또는 허가요건의 구비실태			
2. 분노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업무수행의 적정여부등에 관한 사항	2. 분노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업무수행의 적정여부등에 관한 사항			
3. 분노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실태	3. 분노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실태			
4.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등의 이행여부	4.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등의 이행여부			
			(삭 제)	
				* 시행규칙 제107조 규정에 보고기준 명시 및 이에 준한 지도 점검 실시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처리실적 보고)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예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실적을 다음 달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등)①시장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예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11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의 노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제46조제1항에 규정	(삭 제)	
		* 법 제52조에 규정	(삭 제)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대비표

(별표 4)

현		행			개		정		
		(단위:천원)					(단위:천원)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출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5조)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 미터미만인 오수정화시설	100	200	300	(1)	오수처리시설	1,000	2,000	2,500
(가)	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 미만을 초과					(가) (생 략)			
(나)	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초과	300	400	500		(나) (생 략)	1,500	2,500	3,500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미만을 초과	500	600	700		(라) (생 략)	2,000	3,000	4,000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800	1,000		(라) (생 략)	2,500	3,500	4,500

과태료 부과기준·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단위:천원)					(단위:천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2)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 미터이상인 오수정화시설				(2)	----- 오수처리시설			
	(가)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 미만을 초과	200	300	400	(가)	(생 략)	1500	2500	3500
	(나)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초과	400	500	600	(나)	(생 략)	2000	3000	4000
	(다)방류수수질기준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미만을 초과	600	700	800	(라)	(생 략)	2500	3500	4500
	(라)방류수수질기준 2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800	900	1000	(라)	(생 략)	3000	4000	5000
나. 단독정화조					(삭 제)				
	(1)처리용량 10세제곱미터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2)처리용량 10세제곱미터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300	400	500					

과테료 부과기준 신·구 문대 비표

현		행			개			정		
		(단위:천원)						(단위:천원)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부	과	대	상
다. 신고대상출산폐수정화시설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방류수수질기준 20퍼센트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1,000	2,000	2,500
(2)방류수수질기준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1,500	2,500	3,500
(3)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2,000	3,000	4,000
(4)방류수수질기준 100퍼센트이상 을 초과한 경우				700	800	1,000		2,500	3,500	4,500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개				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							
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5조)							
(1) 처리인원이 90인미만				100	200		300
(2) 처리인원이 90인이상				300	400		500
2.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법 제6조제4항)				300	400		500
3.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행				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신 설)							
(신 설)							
2.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							

과태료 부과기준 · 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가. <u>오수정화시설의 경우</u>				200	500	1,000	가. <u>오수처리시설의</u> ----								300	400	500		
나. <u>정화조의 경우</u>				100	200	500	나. <u>단독정화조의</u> ----								100	200	300		
3. <u>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또는 축산 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을 사용한 자 (별 제11조 또는 제26조)</u> 가. <u>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u>								4. <u>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 또 는 축산폐수처리시설</u> ----- (별 제12조, 제26조)											
(1) <u>정화조, 신고대상 축산폐수정 화시설의 경우</u>				200	200	200	가. (현행과 같음) (1) <u>단독정화조 신고대상축산폐 수처리시설</u> -----								100	200	300		
(2) <u>오수정화시설의 경우</u>				300	300	300	(2) <u>오수처리시설</u> ----								300	400	500		
(3) <u>허가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u>				500	500	500	(3) ----- <u>축산폐수처리시 설의</u> ----								500	700	1,000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부	과	금 액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나. 준공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 정화조, 신고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			500	500	500				500	500	5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800	800	800
(3) 허가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별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											
가. 정화조, 신고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			500	500	500				500	500	500
나. 준공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 단독정화조,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2) 오수처리시설											
(3) --- 축산폐수처리시설 ---											
5.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별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제27조)											
가. 단독정화조,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 ----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부	과	금 액	상 위 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나.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다.	분뇨처리시설, 허가대상 축산 폐수정화시설의 경우			1,000	1,000	1,000				
5.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 폐수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별 제14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									
가.	방류수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이상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			100	200	500				
가.	(현행과 같음)									
(1)	1일 처리대상인원이 2천인이상인 단독정화조			100	200	500				
다.	허가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			1,000	1,000	1,000				
나.	오수처리시설			800	800	800				
6.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별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2)	허가대상 <u>출산폐수정화시설</u> 은 분기별 1회이상	300	500	1,000	(2)	--- <u>출산폐수처리시설</u> ---	300	500	1,000
(3)	1일 처리용량 5세제곱미터이 상인 신고대상 <u>출산폐수정화시</u> <u>설</u> 은 연 1회이상	100	200	500	(3)	신고대상 <u>출산폐수처리시설</u> 은 연 1회이상	100	200	500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현행과 같음)				
(1)	처리용량 10세제곱미터만인 <u>정화조</u> , <u>신고대상출산폐수정화</u> <u>시설</u> 의 경우	100	300	500	(1)	<u>처리인원수 90인미만인 단독</u> <u>정화조</u> -----	100	300	500
(2)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이상 인 <u>정화조</u> , <u>오수정화시설</u> 의 경 우	300	500	800	(2)	<u>처리인원수 90인이상인 단독</u> <u>정화조</u> , <u>오수처리시설</u> , <u>신고대</u> <u>상출산폐수처리시설</u> -----	300	500	800
(3)	허가대상 <u>출산폐수정화시설</u> 의 경우	500	700	1,000	(3)	--- <u>출산폐수처리시설</u> ---	500	700	1,000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다. <u>처리대상인원 500인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u>		300	500	1,000						300	500	1,000		
라. <u>축산폐수배출시설 및 허가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u>		500	1,000	1,000						500	700	1,000		
마. <u>신 설</u>										100	300	500		
6. <u>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u>		500	700	1,000										
(신 설)										500	700	1,000		
(신 설)										500	700	1,000		
(신 설)										500	700	1,000		

과테로 부과기준 신·구 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				10.	----- (법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4항)						
		가.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u>500</u>	<u>700</u>	<u>1,000</u>				<u>300</u>	<u>400</u>	<u>500</u>		
		나.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u>300</u>	<u>500</u>	<u>800</u>				<u>100</u>	<u>200</u>	<u>300</u>		
(신 설)						1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자(법 제24조의 2 제4항)		<u>300</u>	<u>400</u>	<u>500</u>		
(신 설)						12.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법 제 30조제5항)		<u>300</u>	<u>400</u>	<u>500</u>		
(신 설)						13.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자(법 제34조1항 또는 제3항 규정)		<u>300</u>	<u>400</u>	<u>500</u>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신 설)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300	400	500
14. 분노관련영업 허가	를 받은사한	의변경신고	를 하지아니한자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8조 제1항)					
15. 영업구역	기타필요한 조건을	위반한자(법 제35조제3항)					500	700	1,000
16.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법제35조의3 제1항)					500	700	1,000
(삭 제)									
17. 분노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법 제38조 제6항)					500	700	1,000
18.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법제39조제6항)						500	700	1,000
(신 설)									
(신 설)									

과테로 부과기준 신·구 문대비표

현		행		정		안	
부과대상	(시설)	부과금액		부과대상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19. 출입조사 또는 검사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법 제39조의3 제2항,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500	700
				20.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법 제42조제3항)		500	700
				21.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 제1항)		500	700
				22.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 제44조)		300	400
				23. 휴업, 폐업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노관련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업자(법 제45조)		300	400
				24.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법 제46조제1항)		300	400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5. 허가대상축산폐수정화시설은 ----- <u>축산폐수정화시설</u>을 말하며, 신고대상축산폐수 정화시설은 ----- <u>축산폐수정화시설</u>을 말한다.	《비고》 5. 허가대상축산폐수처리시설은 ----- <u>축산폐수처리시설</u>을 말하며, 신고대상축산폐수 처리시설은 ----- <u>축산폐수처리시설</u>을 말한다.			